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799 발의연월일: 2021. 3. 15.

발 의 자:전용기·김민철·윤재갑

홍성국 · 오영환 · 이상헌

장경태 • 윤준병 • 송영길

김승원 · 한병도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 백신 개발이 완료된 이래 보건 정책의 최대 과제는 백신 접종을 가속하여 코로나19에 대한 사회적 공포를 해소하는 것으로 각국 정부는 이를 위한 여러 유인책을 제시하고 있음.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4일까지 백신 1차 접종을 마친 우선접종 대상자는 58만 7,884명인 가운데 접종 뒤 이상반응 의심신고는 8,520건으로, 보건당국은 전체 신고의 98.9%를 근육통, 두통, 발열, 메스꺼움 등 예방접종 뒤 흔히 나타날 수 있는 경증 사례가 있었음.

하지만 즉각적인 업무 복귀가 힘들 정도로 고열이나 통증에 시달렸다는 접종 후기도 적지 않게 신고되고 있어, 길지 않더라도 업무나 일상생활 복귀에 부담을 준다면 자칫 백신 접종 기피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가발생할 우려가 있음. 특히 올해 2분기에는 1,000만명 규모의 접종이 예정

된 만큼 차질 없는 접종을 위해서라도 정부와 국회는 '백신 휴가'를 신속히 도입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을 개정하여 사업주 및 학교의 장이 소속 구성원이 백신을 접종하는 경우 유급휴가를 제공하거나 비결석으로 처리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코로나19 극복 및 사회 안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1조의2, 제41조의3 및 제79조).

법률 제 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 또는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받을 때에는 반드시 주어야 한다.
- 1.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입원 또는 격리되는 기간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염병의 백신을 접종하는 경우: 접종일로부

터 2일

제4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3(학교의 협조의무) 「학교보건법」제2조제2호의 학교의 장은 학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염병의 백신을 접종하는 경우 접종일로부터 2일 동안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불리하게 처우해서는 아니 된다.

제79조제3호의3을 제3호의4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3. 제41조의2 또는 제41조의3을 위반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혂

개 정 안

제41조의2(사업주의 협조의무) ① 제41조의2(사업주의 협조의무) ① 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 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 |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근로 기준법 _ 제60조 외에 유급휴가 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ㅣ 를 줄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 또는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받 을 때에는 반드시 주어야 한다. 1.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 되는 경우: 입원 또는 격리되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염병 의 백신을 접종하는 경우: 접 종일로부터 2일
- ② ~ ④ (현행과 같음)

는 기간

제41조의3(학교의 협조의무) 「학 교보건법 | 제2조제2호의 학교 의 장은 학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염병의 백신을 접종하 는 경우 접종일로부터 2일 동안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불리하게 처우해서는 아니 된다.

② ~ ④ (생 략) <신 설>

제7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제79조(벌칙) -----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의2. (생 략) <u><신 설></u>

<u>3의3.</u> (생략) 4.·5. (생략) ______

----**.**

1. ~ 3의2. (현행과 같음)
3의3. 제41조의2 또는 제41조의
3을 위반한 자
3의4. (현행 제3호의3과 같음)

4. • 5. (현행과 같음)